

의안번호	제854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자	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임영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4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임영은,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황영호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사회문제화 되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交通安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 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1. 6. 8.]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27.>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스티커 등의 제작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5조, 제6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조례 제5조(사업) : 해당없음

-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위탁 추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에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추진 중

○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 향후 5년간 1,616,1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역화폐) 1인 10만원 지급(도비30%, 시군비70%)
- 필요예산 : 2025년(264,700천원), 2026년(291,200천원), 2027년(320,300천원, 2028년(352,300천원), 2029년(387,600천원)

〈비용추계 산출근거〉

(반납인원) 전년도 충북도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의 1.5%* 이내 인원수

*충북도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평균비율 1.76%('22년^{1.9%}, '23년^{1.8%}, '24년^{1.6%})

(면허소지자)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 면허소지자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 추세

(비용산출) 반납인원(도내 고령운전면허소지자×1.5%)×10만원(교통비)×100%(도비30, 시군비70)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고령운전 면허 소지자	176,495	194,144 ^{추정}	213,558 ^{추정}	234,913 ^{추정}	258,404 ^{추정}
반납인원	2,647	2,912	3,203	3,523	3,876
소요예산	264,700천원	291,200천원	320,300천원	352,300천원	387,600천원

※ 출처 : 경찰청(「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4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성과분석)

라. 재원조달방안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 해당없음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 도비 484,830천원, 시군비 1,131,27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64,700	291,200	320,300	352,300	387,600	1,616,100
(안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264,700	291,200	320,300	352,300	387,600	1,616,100
재원 조달		264,700	291,200	320,300	352,300	387,600	1,616,1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9,410	87,360	96,090	105,690	116,280	484,830
	지방세	79,410	87,360	96,090	105,690	116,280	484,830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185,290	203,840	224,210	246,610	271,320	1,131,27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